

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, 2009. 11. 26(목)

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임채옥

<의안번호 제2009 - 46호>

#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09. 11. 12.
- 나. 제출자: 안철우 의원 외 1명
- 다. 회부일자: 2009. 11. 16.

## 2. 제안이유

-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  -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
  -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
  - 다른 지역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
- 다.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.

-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 방지
- 라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(안 제5조).
- 마. 거창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그 밖에
  - 1)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「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」은 2009년 11월 12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2009년 11월 16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것임.
- 이 조례안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,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제정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